

학생창업지원위원회 규정

제정 2023. 02. 28.

제 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“상지대학교 학생창업지원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(목적) 이 규정은 재학생들의 창업을 성과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하여 정관, 학칙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 4조(구성 및 임기) ①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.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총장은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 창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학생 창업 관련 재학생 만족도 조사,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학생 창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

제 6조(회의 및 소집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교직원 및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행정지원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교직원 및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8조 (간사 및 서기) 위원회는 학생취업지원처 창업지원팀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 9조 (경비지급)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획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443, 2023. 2. 28.)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